

제322회 정례회
2013. 7. 17.(수)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7. 17.(수)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영주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3년 6월 19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6월 25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7월 3일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 영 주 의원)

가. 제안이유

-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
-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신설
(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문 홍 열)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등 기금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함.
-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12. 1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는 자원자로 구성하되, 설치 및 운영 등은 시·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입법예고("13. 5. 30. ~ 6. 18.)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은 없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 기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2조(기금구성) 충청북도 <u>환경보전 기금</u>(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7. (생략)</p> <p><u><신 설></u></p>	<p><u>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2조(기금구성) ----- <u>환경보전기금</u>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6조(<u>위원의 제척·기피·회피</u> 등) ① <u>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u></p> <p>② <u>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u></p> <p>③ <u>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u></p>
<p><u>제6조 ~ 제10조 (생략)</u></p>	<p><u>제7조 ~ 제11조 (각각 현행 제6조 ~ 제10조와 같음)</u></p>

관 계 법 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조례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따라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2012. 10. 10>

제2조(기금구성) 충청북도 환경보전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6. 30, 2012. 10. 10>

1.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
5.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 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중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10>

②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바이오환경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환경정책과 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8. 1. 1, 2010. 6. 30,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제4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

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2. 10. 10>

1.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른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2.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에 의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

3. 충청북도 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 운영 지원

4. 생태계, 생물종의 보존·복원사업 및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5. 야생동물보호 관련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충청북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2. 10.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0. 10>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 결산보고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2. 10.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 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10>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2. 10. 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2. 10. 1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12. 10.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